

『퇴직연금용 정기에금(만기지급형)』 상품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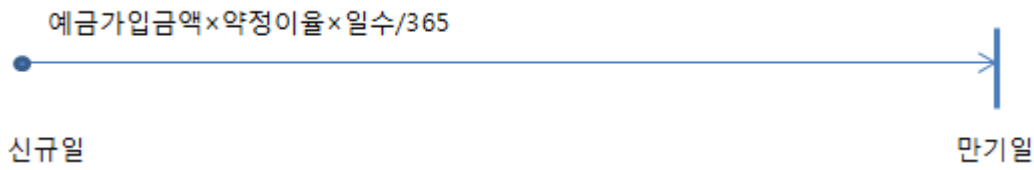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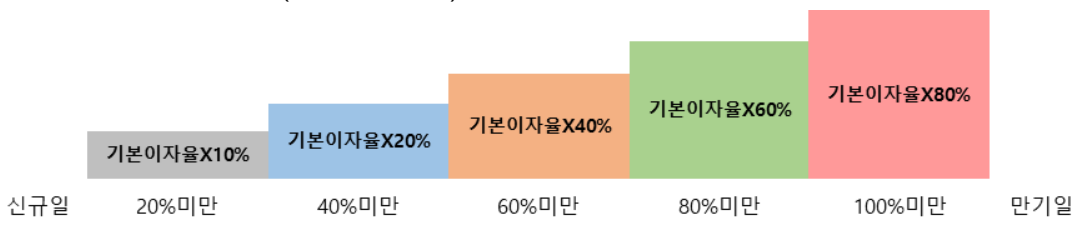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용 정기에금(만기지급형)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에금

2 거래 조건

구분	내용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 정기에금	
거래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가입금액	• 1원 이상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에금 :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용 정기에금 : 36개월 ~ 60개월 (연, 월, 일 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22.12.02현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에금]	
	예치기간	연 이자율
	6개월	연4.01%
	1년	연4.81%
	2년	연4.75%
	3년	연4.80%
5년	연4.68%	

구 분	내 용												
기본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22.12.02현재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table border="1" data-bbox="391 302 1444 414"> <thead> <tr> <th>예치기간</th> <th>연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3년</td> <td>연4.85%</td> </tr> </tbody> </table>	예치기간	연 이자율	3년	연4.85%								
예치기간	연 이자율												
3년	연4.85%												
만기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예금가입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 / 365 												
중도해지 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391 1120 1500 1422"> <thead> <tr> <th>예치기간</th> <th>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입금일로부터 20% 미만 경과 시</td> <td>기본이자율 x 10%</td> </tr> <tr> <td>입금일로부터 20%~40% 미만 경과 시</td> <td>기본이자율 x 20%</td> </tr> <tr> <td>입금일로부터 40%~60% 미만 경과 시</td> <td>기본이자율 x 40%</td> </tr> <tr> <td>입금일로부터 60%~80% 미만 경과 시</td> <td>기본이자율 x 60%</td> </tr> <tr> <td>입금일로부터 80%~100% 미만 경과 시</td> <td>기본이자율 x 80%</td> </tr> </tbody> </table> <p>※ 만기일 대비 경과기간비율에 따른 기본이자율 비율 적용함 3년 이상 경과분: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3년제 고시이자율 적용함</p>	예치기간	이자율	입금일로부터 2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10%	입금일로부터 20%~4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20%	입금일로부터 40%~6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40%	입금일로부터 60%~8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60%	입금일로부터 80%~10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80%
예치기간	이자율												
입금일로부터 2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10%												
입금일로부터 20%~4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20%												
입금일로부터 40%~6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40%												
입금일로부터 60%~8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60%												
입금일로부터 80%~100% 미만 경과 시	기본이자율 x 80%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p>※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또는 재예치일)당시 해당계좌에 적용된 기본이자율입니다.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p>												

구 분	내 용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22.12.02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영업점 및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 단, 6)과 8)의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⑦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③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수탁자의 사임 4) 가입자의 사망 5)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및 가입자 제도 전환의 경우 6)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을 위한 경우 7)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중도해지이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91 1630 742 1686">경과기간</th> <th data-bbox="742 1630 1527 1686">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1 1686 742 1787">1년 미만</td> <td data-bbox="742 1686 1527 1787">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6개월제 고시이자율</td> </tr> <tr> <td data-bbox="391 1787 742 1888">1년 이상 2년 미만</td> <td data-bbox="742 1787 1527 1888">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1년제 고시이자율</td> </tr> <tr> <td data-bbox="391 1888 742 1989">2년 이상 3년 미만</td> <td data-bbox="742 1888 1527 1989">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2년제 고시이자율</td> </tr> <tr> <td data-bbox="391 1989 742 2074">3년 이상</td> <td data-bbox="742 1989 1527 2074">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3년제 고시이자율</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이자율	1년 미만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6개월제 고시이자율	1년 이상 2년 미만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1년제 고시이자율	2년 이상 3년 미만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2년제 고시이자율	3년 이상
경과기간	이자율									
1년 미만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6개월제 고시이자율									
1년 이상 2년 미만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1년제 고시이자율									
2년 이상 3년 미만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2년제 고시이자율									
3년 이상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 당시 일반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의 3년제 고시이자율									

구 분	내 용	
예금자보호여부	DC/ IRP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DB	 <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세제혜택	불가	
재예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예금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약정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 됩니다.)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약정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부분인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회(만기해지 포함)까지 가능(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및 퇴직연금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계약해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해지 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구 분	내 용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일부 해지 포함)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용 어	설 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